

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시는 국제 자매도시 창사(長沙)시와의 자매결연 20년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경제·문화·청소년 등 다방면의 교류를 한 단계 더 심화하고,

나. 관내기업의 대 중국 서부지역 시장 선점 지원과 중국 요우커 유치 등 적극적인 교류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·운영하고자 함.

다. 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금액 : 금150,000,000원(시비)

(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3)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- 조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 사업

(1) 통상분야 지원

- 현지 공관, 코트라무역관, 지·상사 네트워크 구축
- (투자가 발굴) 현지 기업동향 정보 수집 및 시장조사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
- (박람회 참가 제반사항 지원) 관내기업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지원
- 중국진출 관내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협의체구성
- (전시관 운영) 구미 완제품 전시를 통한 현지 마케팅지원

(2) 교류분야 지원

-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미시 관광자원 홍보
- 한·중 양국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(문화, 스포츠, 관광 등)
- 현지 각종 행사 참가를 통해 구미시 기업, 제품 등 홍보

(3) 구미시 중국 대표부 역할 수행

- 중국과의 교류 협력 등 창구역할 수행
- 구미시 기업인, 기관단체 등에 현지 방문활동 및 행정지원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구미시는 중국진출 교두보 마련을 통한 관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중국수출 지원과 신규 투자자 발굴 등 적극적인 통상활동 전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
- (2) 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는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직접 교류의 창구로써, 구미시의 중국 대표부 역할을 수행
- (3) 또한 한·중 양국 간의 민간교류(문화, 스포츠, 관광 등)를 활성화하고 중국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미시 관광자원 홍보를 추진하여 글로벌 문화 관광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※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

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소관 실 · 과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최 동 문
	담 당	장 인 수
	담 당 자	정 은 희 (480-6103)